

## ▶ 연구윤리 관련 규정

###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및 연구관련 윤리규정

#### 1장 저자에 대한 윤리규정

**1조(표절)** 과학기술법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저서, 학술지 등의 저자는 자신이 수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해서는 아니 된다. 비록 타인의 연구결과를 출처를 명시하여 여러 차례 참조하더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제2조(출판업적)** ①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된다.

② 논문이나 기타 출판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의해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되지 아니 한다. 반면 연구나 저술에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저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역시 정당화될 수 없다. 다만, 연구나 저술에 대한 작은 기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감사를 적절하게 표한다.

③ 학생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논문을 기초로 한 다수의 공동저술인 논문의 경우에는 학생이 제1 저자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연구결과물의 중복게재 또는 이중출판)**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결과물(제재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결과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결과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해서는 아니 된다. 이미 발표된 연구결과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중복게재나 이중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인용 및 참고 표시)** ① 이미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상식에 해당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획득한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② 타인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를 통해 인용여부 및 참고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저자의 독창적인 생각주장·해석인지를 독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조(논문의 수정)** 논문의 평가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 편집위원(회)에 제시하여야 한다.

## 2장 편집위원에 대한 윤리규정

**제6조(게재여부 결정 등)**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논문에 대한 공정한 취급)**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관계없이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8조(논문심사의 의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가진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심사의뢰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심사위원을 회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단, 동일한 논문에 대한 평가에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9조(저자 등의 비공개)**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자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제3장 심사위원에 대한 윤리규정

**제10조(논문심사 및 결과의 통보)**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논문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게 자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위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아니 되며, 심사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아니 된다.

**제12조(저자의 인격 및 독립성의 존중)** 심사위원은 저자의 전문지식인으로서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논문심사표(또는 평가의견서)에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상세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표현은 가급적 정중하고 완곡하게 하며, 특히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3조(비밀유지의무)**

심사대상논문에 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즉, 심사위원은 심사대상논문을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논문의 내용에 대해 타인과 논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논문 심사를 위해 특히 관련전문가의 조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심사위원은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아니 된다.

#### 4장 연구관련윤리규정의 시행지침

**제14조(연구윤리위원회)** 본 연구원의 편집위원회가 독립된 연구윤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연구윤리 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약칭함)를 겸한다.

**제15조(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연구관련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약칭함)의 위반사안에 대하여 폭넓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하며, 윤리규정의 위반이 사실이 판정되는 경우에는 본 연구원의 원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16조(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의 위반으로 보고된 저자는 윤리위원회의 진상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해당 저자가 윤리위원회의 진상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이는 그 자체로 윤리규정에 대한 위반으로 간주된다.

**제17조(소명기회의 보장)**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의 위반으로 보고된 저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위원은 윤리규정의 위반에 대한 최종적인 징계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저자의 신원을 외부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징계 요구)** 윤리위원회의 제재조치권고가 있는 경우, 본 연구원의 원장은 해당 저자의 소속기관 이사회에 해당 저자에 대한 징계여부 및 징계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 7. 1부터 시행한다.